

IMO 제5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59) 참석결과 보고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IMO 제5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59th session)
- 기간/장소 : 09. 7. 13 ~ 7. 17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 참 석 자 : 안전기획팀 박정대 책임검사원

II. 의제 목차

1. [의제 2] 평형수내 유기생물체
2. [의제 3] 선박재활용
3. [의제 4]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
4. [의제 5] 협약개정 검토 및 채택
5. [의제 6] MARPOL 관련협약 개정사항 해석
6. [의제 8] 특별구역과 특별민감구역의 식별 및 보호

III.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2	평형수내 유기생물체
------	------------

1.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활성 물질의 기본승인 및 최종승인

가. 의제 개요

- GESAMP-BWWG로부터 선박평형수 처리에 사용되는 활성물질의 기본승인 및 최종승인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는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승인

나. 논의 경과 및 의제내용

- GESAMP-BWWG은 다음과 같이 활성물질 기본승인, 최종승인을 권고
 - 독일 RWO의 CleanBallast 처리장치 최종승인 (MEPC 59/2) 허락
 - 일본 선박안전협회의 Special pipe(SP-Hybrid BWMS Ozone Version) 최종승인 (MEPC 59/ 2/1) 불허
 - 중국 COSCO의 Blue Ocean Shield 기본승인(MEPC 59/2/2) 허락
 - 아국 (주)엔케이의 NK-O3 BlueBallast 최종승인 (MEPC 59/2/3) 허락
 - 아국 현대중공업의 EcoBallast 기본승인 (MEPC 59/2/4) 허락
 - 일본 Hitachi의 ClearBallast 최종승인 (MEPC 59/2/5) 허락
 - 네덜란드 Greenship의 Greenship Sedinox 최종승인 (MEPC 59/2/6) 허락
 - 독일 Aquaworx의 Aqua TriComb 기본승인 (MEPC 59/2/8) 허락
- ※ 아국 현대중공업의 EcoBallast는 최종승인을 만족하는 문서로 평가 받음
- 차기 제10차 GESAMP-BWWG 회의는 2009년 9월 14~18일로 아국 파나시아의 GloEn-Patrol 시스템 최종승인 심의 예정
- 제11차 GESAMP-BWWG 회의는 2009년 10월 19~23일로 관련 신청서는 2009년 8월 28일까지 접수해야 함
- GESAMP-BWWG은 UV 사용기술에서 활성물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G9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정부의 형식승인(G8)을 받은 영국 문서(MEPC 59/INF.20)에 대해 IMO의 검토를 요청했음

-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유럽국가(독일, 영국 등)는 UV 이용 시스템에 따라 활성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바, 이는 독성시험 등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가 G9 승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한 지지가 많았음
- MEPC의장은 UV 사용기술은 각국 정부의 판단 하에 활성물질 승인(G9) 혹은 형식승인(G8) 적용하도록 권고함

2. 이용 가능한 선박 평형수 처리 기술 검토

가. 의제 개요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규칙 B-3.3에 의해 2010년에 건조되는 선박에 D-2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장착 가능성 검토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일본은 2010년 BWMS 선박 적용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문서(MEPC 59/2/18)를 제출하였음
- 각국 대표단 의견을 수렴한 바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우크라이나 및 NGO인 ICS도 2010년에는 적용 및 공급가능 기술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2010년 적용을 지연할 이유는 없고 일본 문서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
- 검토반은 29차 Assembly 회의 관련 2010년 적용을 위한 형식승인 받은 기술이 충분한가에 대한 검토를 하여 보고하도록 요청 받음
- 아국의 형식승인된 제품 Electro-Cleen

System을 비롯한 노르웨이, 영국의 형식 승인 제품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현재까지 IMO 승인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4개, 형식승인만 받은 제품이 2개 총 6개 기술이 공급가능하며, 이번 총회에서 추가로 4개 제품에 대한 최종승인을 결정 함에 따라서 2010년에는 공급가능한 기술이 총 10개 이상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독일 6개 기술로 800unit, 아국은 4개 기술이 500척에 대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함)

- 일본은 공급 가능한 기술의 수보다 실제 선박에 적용할 기술이 많지 않다는 점과 사전 설계 적용을 위해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중국, 브라질이 동조하였으나, 아국의 조선소의 경우에는 이미 기술 검토들을 하여 왔고 선주와 조선소의 의지가 있다면 1~3개월에도 설계 검토가 충분하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독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미국, ICS 등 11개 기국이 동의 발언을 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함
- 2010년에 건조되는 선박에 D-2 성능을 만족한 BWMS 설치에 문제가 없으므로 총회 결의서 A1005(25)의 개정은 필요 없음

3. 선박평형수로서 Portable Water의 사용

가. 의제 개요

- 영국은 portable water를 선박평형수로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 협약 적용 면제 검토를 요청함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영국은 portable water를 메가 요트 및 해군

함정의 선박평형수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대부분의 국가들이 청수 사용시 염소 성분 배출 등 또 다른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음
- 청수(PORTABLE WATER) 평형수는 협약 적용 대상으로 결정됨. BLG에서 개발 중인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한 절차서”가 확정된 후 논의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4. 향후 검토반 작업 내용

- ICS가 2012년 적용 시작 전 또는 협약 발효 전 검토반이 새로운 선박평형수 처리 기술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위의 검토 사항과 또 다른 검토사항(규칙 D-5.1)을 위해 MEPC 61차 회의에 검토반을 재구성하기로 함

5. 주요 결정사항

- 통신작업반에서 작성한 “유해물질목록지침서” 채택
- “선박재활용(시설) 지침서”는 미국이 제안한 문서를 기반으로 통신작업반에서 작성하여 차기 MEPC 60차에 보고 예정
- “선박재활용국가의 권한기관(competent authority)를 위한 승인업무 RO 지침 개발제안”에 대한 아국 문서는 금번 채택되어, 안내서(guidance document) 형식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승인함
- 협약 발효 조건의 만족에 위한 재활용 용량 계산과 관련하여 사무국이 제안은 원안대로 “연간 선박재활용 실적 최대치의 합계의 자료를

Lloyds’s Register-Fairplay의 연간출판물인 “World Casualty Statistics”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승인함

- 지침서 개발 우선 순위
 - 유해물질 목록 개발 지침서, 안전하고 환경건전한 선박재활용 지침서, 선박재활용계획서 개발 지침서, 선박재활용시설 승인 지침서, 검사 및 증서교부 지침서, MEPC 식별 지침서 및 회람문서
- 통신작업반 “TOR” 초안
 - MEPC 59/3/1의 ANNEX 1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 지침서”안을 세부적으로 개발하고 차기 회의 제출
 - 시간이 허락되면 “선박재활용계획서 개발 지침서” 초안 개발 착수
 - 시간이 허락되면 “선박재활용시설 승인 지침서” 초안 개발 착수
 - 연구 결과물을 차기 회의에 제출할 것

의제 3	선박재활용
------	-------

1. 선박재활용 통신그룹 보고서

가. 의제개요

- 통신작업반의 보고서를 근거로 작업반에서 최종안 도출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통신그룹반에서 「Table D: 잠재유해물질을 포함한 일상소모품」에 대한 분류가 세 항목(D-1,2,3)이었으나, 금번 D-2를 D-1에 포함시키고, 가구, 침대 등이 언급된 D-3를 삭제함. 선박용 특정 장비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Part 1에 목록화해야 함

- “Intentionally Added” 용어를 삭제함.
Table A 및 B에 기재된 물질중 경계조건이 없는(no threshold level) 물질에 대해서는 의도적이지 않은 소량의 오염으로 인한 발생에 대해서는 목록화할 필요 없음
- Table B에 언급된 물질이 고체 금속, 금속 합금에 함유되어 선체, 구조물, 파이프, 장비나 기기의 몸체로 사용된 경우 목록화 불요
- MD를 업체로부터 접수하지 못할 경우 List화 해서 다음 정기검사 때까지 준비하게 하지는 안이 통신그룹반에서 제시되었으나, 협약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빌미를 줄 수 있어 MD 미접수에 대한 예외 사항을 삭제함
- Visual/Sampling Check Plan의 승인이 초기 지침서에는 언급되어 있었으나 협약의 요구사항 범위 밖이므로 승인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어 관청이나 RO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론
- Sampling 검사 시 같은 종류의 유해물질은 그룹화 가능함
- 잠재적유해물질이 포함된 의장품의 목록표 작성 시 Remark란에 “PCHM”(잠재적 유해 물질) 표기
- 장비나 기기에 주입된 소량의 윤활유, 고착 방지제 및 그리스 등은 목록화 불요(지침서에는 소량에 대한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작업반 구성원들은 1kg 또는 1리터 미만으로 이해함)
- 작업반에서 도출된 유해물질목록 지침서를 Plenary에 보고 예정(7.16, 목)이며 금번 결의서로 채택됨

2. 선박재활용 지침에 관한 통신작업반 보고서

가. 의제개요

- 현재까지의 통신작업반의 결과를 일본이 발표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차기 통신작업반에서 다루기로 하였으며, 미국이 제안한 문서(MEPC 59/3/1) 부속서 3 문서를 기본으로 작성하기로 함.
- 차기 통신작업반에 대한 위임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MEPC 59/3/1 문서의 부속서 1을 기준으로 「선박재활용 지침서」 초안 개발
 - 「선박재활용계획서 작성 지침서」의 초안 개발
 - 「선박재활용 시설의 승인에 대한 지침서」의 초안 개발
 - 상기 개발된 지침서를 MEPC 60차에 보고할 것

3. 선박재활용국가의 권한기관(competent authority)의 승인업무 RO 지침 개발제안

가. 의제개요

- 작업반에서 의제 소개하였으며, 대다수의 회원국으로부터 지침서 개발 필요성에 대해 지지를 받음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지침서(guideline) 보다는 안내서(guidance document)가 개발되어야 함에 동의함. 아국의 의제는 재활용시설을 보유한 일부 국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침서 보다는 안내서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회원국 의견임

4. 비당사국 및 무국적 선박에 관한 지침서

가. 의제개요

- 작업반에서 소개되었으며, 대다수의 회원국으로부터 지침서 개발 필요성에 대해 지지를 받음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지침서(guideline) 보다는 안내서(guidance document)가 개발되어야 함에 동의함. 아국의 결과와 유사함

5. 선박재활용 통신작업반 보고서에 대한 조언 및 선박재활용작업시 입실을 위한 안전 및 열작업을 위한 안전기준 체계에 대한 조언

가. 의제개요

- 선박재활용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세 논의되지 않음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향후 통신작업반의 지침서 개발 논의시에 specific text를 제안하기로 함

6. 선박재활용 통신그룹 보고서에 대한 IACS의 Comments

가. 의제개요

- 작업반에서 논의되었으며, 제안사항 대부분은 유해물질목록 지침서에 포함되어 처리됨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유해물질조사방법의 각 단계별 항목(equip-

ment, system and/or area)에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고 차기 논의를 위하여 IACS에서 상세자료를 제출하기로 함

- Visual/Sample Check과 관련한 전문가 그룹의 자격조건에 대한 상세 논의는 금번 진행되지 않음

7. 협약 발효 조건의 만족에 위한 재활용 용량 계산에 대한 MEPC 결의서 제안

가. 의제개요

- Plenary에서 사무국이 발표하고, 대다수의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음. 아국도 지지 발언함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사무국이 제안한 결의안은 원안(연간 선박 재활용 실적 최대치의 합계의 자료를 Lloyds’s Register-Fairplay의 연간출판물인 “World Casualty Statistics”의 자료를 이용하는것)대로 통과함

의제 4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
------	----------------

1. GHG(온실가스) 관련 - 기술 및 운항관련조치

가. 의제개요

- IMO에서의 온실가스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몇 개국 대표들이 CO₂ 배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MARPOL 부속서 6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2/3의 찬성을 얻지 못한 1997년 9월 제4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시작되었음. 같은 해 MARPOL 부속서 6을 채택한 대기오염 외교회의(Air

Pollution Conference)에서 외교회의 결의서 8(Conference Resolution 8-CO₂ Emissions from Ships)을 채택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CO₂ 배출량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선박으로부터의 CO₂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UNFCCC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음

- 하지만,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5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GHG-WG 1, MEPC 58, GHG-WG 2의 논의를 거쳐 1)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EEDI), 2) 현존선 에너지효율 운항지수(EEOI), 3)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및 4) 시장기반 조치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졌음
- 이번 회기에 의제 4로 제출된 문서는 1) MARPOL 부속서 6 관련 사항 및 2) 온실가스 관련사항으로 구분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배출통제지역(ECA) 및 MARPOL 부속서 6 관련 사항에 대한 기술작업반(Technical Group)과 온실가스 관련사항에 대한 작업반(Working Group)이 별도로 결성되었음
- 한편,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본회의에서는 기술 및 운항관련조치는 작업반에서 논의하고 협약의 채택방법 및 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2010년 3월 개최 예정인 제6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번 회기에는 기술 및 운항관련 조치와 시장기반조치에 논의를 집중하였음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기술 및 운항관련 조치를 다루기 위한 온실

가스 작업반이 구성되었음

- 의장 : 요시다(일본)
- 일정 : 2009. 7. 14~7. 16(3일간)

- 작업반의 주요 위임사항(TOR : Terms of Reference)은 아래 사항에 대한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회람문서 초안 (Draft MEPC Circular)을 작성하는 것임

-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EEDI)
- EEDI의 자발적 검증을 위한 잠정기준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개발을 위한 지침(SEEMP)
- 현존선 에너지효율 운항지수(EEOI)

- EEDI의 경우, 제2차 온실가스 작업반 회기간 회의에서 결정된 수식의 개정에 관한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여객선 전용의 EEDI에 대한 문서만 제출되었으며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2차 온실가스 작업반 회기간 회의에서 결정된 수식은 변경 없음
- Ro-ro cargo ship의 정의 추가
- 연료유 환산계수 변경
- 컨테이너선은 65% DWT를 사용
- 여객선의 보조기관용 연료소비율은 연속 최대출력의 75% 값을 사용

- 베이스라인을 추정하기 위한 수식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베이스라인 방법론에 논의가 집중되었음. 그 결과 베이스라인 설정을 위한 기준안(Draft guide for establishment of baseline for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for new ships)이 작성되어 논의하였으나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 하에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하였음

※ 아국 활동사항(베이스라인) :

- LNG 선박의 추진방식별 EEDI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LNG 선박의 베이스라인은 추진방식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LNG 선박에 대한 베이스라인은 재고려 하여야 한다'는 아국 문서(MEPC 59/4/22)에 대하여 SIGTTO를 비롯한 관련 단체는 물론 LNG 건조/운항 실적이 있는 선사 및 국가(벨기에 등)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으며 공동 연구를 제안받음
- EEDI의 단계적 적용에 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
- EEDI의 검증에 관해서는 일본 및 덴마크가 공동으로 제출한 문서를 바탕으로 회람문서 초안을 작성하였음

※ 아국 활동사항(검증) :

- ISO 15016을 바탕으로 기준속력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아국 문서(MEPC 59/4/39) 관련, 7월 15일 점심시간에 작업반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 그 결과 ISO TC 8 의장, 영국 왕립조선학회, IACS 및 많은 정부들이 관심을 표명하였고 일본은 fw 및 Vref에 대해 공동 연구를 제안
- EEOI에 대하여는 통신작업반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람문서 초안을 작성하였음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개발을 위한 지침(SEEMP)은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제2차 온실가스 작업반 회기간 회의 결과와 일본/미국이 제출한 문서를 바탕으로 회람문서 초안을 작성하였음. 특기할 사항은 ISM에 대한 언급이 회람문서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임

2. 시장기반의 저감방법(배출권거래제, 국제온실가스펀드) 관련

가. 의제개요

- 2003년 12월 채택된 총회결의서 963(23) (IMO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위원회는 국제해운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또는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운항관련 조치 및 시장기반 조치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을 요청받았음
-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시장기반 조치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가능한 많은 문서를 제5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금번 회의에서는 시장기반조치의 도입목적 및 수익의 활용방안과 각 제도(배출권거래제, 국제온실가스펀드)와 관련하여 제안된 사항 등에 대해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짐
 - 도입의 목적: 해운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의 감축활동을 통한 해운부문 감축 목표의 상쇄(offset), 제도의 시행을 통해 발생된 수익으로 R&D,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 및 적응활동에 활용
 - 국제온실가스펀드의 시행방안: (1) 선박은 등록된 연료공급자로부터 연료를 구입; (2) 연료공급자의 의무등록; (3) 연료공급자는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기부금을 징수하고 온실가스 펀드 관리기구로 이전; (4) 펀드 관리기구는 수익을 관리하며, 기후

-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배출권거래제의 장점: (1) 해운부문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음; (2) 환경적/비용효과적인 수단; (3) 제도의 시행을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다른 부문에서의 제도의 시행 경험을 통한 선행학습
 - 위원회 및 대다수의 대표단은 시장기반 조치에 대한 논의 사항이 여전히 초기단계이므로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제60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하였음
 - 향후 회의에서 위원회는 시장기반조치의 타당성 및 환경적, 경제적, 행정적 그리고 법적 측면에 대한 검토와 제도의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등의 검토사항을 채택함
 - 시장기반조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의장이 제안한 작업계획서(work plan)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에 동의함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의 작업계획서를 활용하기로 함
 - 1) 회원국, 준회원국 그리고 비정부간 기구는 제6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시장기반 조치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의 제출이 촉구됨
 - 2) 제6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국제해운 부문에 대한 시장기반조치 도입의 타당성 연구와 파급효과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과 요건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특히 개도국의 해운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임
 - 3) 2)항에서 언급된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시장기반조치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를 제6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4) 3)항에서 언급된 결과를 토대로, 제6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시장기반 조치와

관련된 진척사항을 제27차 총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임

다. 기타사항

- 시장기반조치와 관련하여 각국의 첨예한 입장차이가 발생함
 -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차이: 중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및 도서국가들은 기후변화협약의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원칙을 주장하고, 주요 선진국들은 IMO의 NMFT (No More Favorable Treatment)원칙을 주장함
 - 시장기반조치의 효과에 대한 입장차이: 선진국은 시장기반조치가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이며, 기술적 조치 및 운항관련 조치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은 시장기반조치에 필요한 새로운 행정조직에 대한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개도국으로 전가되는 것을 우려함
- 노르웨이(MEPC 59/4/24)와 일본(MEPC 59/ 4/35)은 시장기반조치의 이행을 위한 감축목표 설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함
 - 노르웨이의 제안: 온실가스 배출부문 전체에 대한 한계저감비용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해운부문에 적용하여 추정된 감축잠재량을 기초로 감축목표를 설정
 - 일본의 제안: 기술 및 운항관련 노력을 통해 달성 가능한 에너지효율 향상 수준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감축목표의 설정
- 시장기반조치를 기술적 조치 및 운항관련 조치와 함께 국제해운으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comprehensive package)에 포함하기로 동의함

- 제6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논의 사항은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반영하기로 함

의제 5 협약 개정의 검토 및 채택

1. MARPOL 부속서 I 제8장의 추가 채택

가. 의제개요

- 동 위원회는 MARPOL 부속서 I 의 개정 (신규 제8장 추가 및 IOPP증서 추록 B 부분 개정)을 MEPC 58에서 승인한 바 있으며, 이번 회기에 D/G을 통해 검토한 후 협약 개정 결의서를 채택하였음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MARPOL Annex I 에 신규 추가된 제8장 제40규칙(STS operations의 적용 범위)의 적용시기를 2012년 3월 1일로 확정하였음
- MARPOL Annex I 에 신규 추가된 제8장 제41규칙(STS operations 관련 안전과 환경 보호)에 따른 STS operations Plan의 강제 비치 적용시기를 2010년 12월 1일로 확정하였음
- MARPOL Annex I 제42규칙(통보) 관련 하여 STS operation을 하기 위한 사전 통보 요건은 초안대로 “계획된 STS operations 의 48시간 전에 영해 또는 EEZ(Exclusive Economic Zone) 내의 당사국에 통보”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2. MARPOL 부속서 I 개정의 채택

가. 의제개요

- 동 위원회는 MARPOL 부속서 I 의 개정

(제1, 12, 13, 17, 38규칙 및 IOPP증서와 기름기록부 개정)을 MEPC 58에서 승인한 바 있으며, 이번 회기에 D/G을 통해 검토한 후 협약 개정 결의서를 채택하였음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MARPOL 부속서 I 제12규칙의 개정안 중에서 마셜아일랜드(MEPC 59/5/3)의 제안 (슬러지 서비스탱크로부터 선저폐수저장 탱크에 모인 유성빌지는 기름필터링 장치를 통해 배출하도록 하는 문구 추가 제안) 관련 하여 최종 개정 결의서에는 “선저폐수저장 탱크 또는 빌지웰에 모인 유성빌지를 기름 필터링장치를 통해 배출”하도록 하는 문구로 추가하였음
- MARPOL 부속서 I 의 제1규칙에 일부 정의 (유성잔류물, 유성잔류물 탱크, 선저폐수 저장탱크)가 신규 추가되었음
- MARPOL 부속서 I 의 제12, 13, 17 및 38 규칙에서 “sludge”가 “oil residue(sludge)”로 교체되었고, 제17.2.3규칙에서 “and other oil residues”가 삭제되었음
- IOPP증서 추록 A/B가 일부 개정되었음
 - 기존의 “3.2.3 Tank for mixing oil residues with fuel oil, capacity” 항목 삭제
 - IOPP증서 추록B 5.8.2항의 “(double bottome requirements)”를 삭제
 - IOPP증서 추록B 5.8.5항 및 5.8.7항을 소항목별로 세분화함
 - IOPP증서 추록B 6.1.5.4항 삭제
- 기름기록부 Part I 의 개정
 - 코드 (C) 11.4항(수동 작업으로 이송한 잔류물 양) 추가되었음
 - 코드 (D) 15.3항(슬롭탱크, 선저폐수저장

- 탱크 또는 기타 탱크로 유성잔류물의 이송
추가되었음
- 기름기록부 Part II의 개정
- 코드 (J) 제목을 부분 개정

의제 6 | MARPOL 관련 협약 개정사항 해석

1. ECA 및 MARPOL Annex 6에 관한 T/G report

가. ECA(Emission Control Area)

-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안한 문서(MEPC 59/6/5)로 미국과 캐나다 연안의 200 n.mile 까지를 ECA로 지정하여 MEPC 60th에 MARPOL ANNEX 6에 삽입하자는 내용이 있음. 검토결과 Appendix III of MARPOL ANNEX 6의 표준에 만족하므로 Plenary에서부터 대부분의 회원국이 지지하였음
- ECA area의 범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으며, 프랑스에서 자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본 문서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결과를 MEPC 60th에 제출할 예정임

나. EGCS(Exhaust Gas Cleaning System)

- 황 세정수에 지침서인 Resolution MEPC.170(57)에 대해서 GESAMP의 58에서 승인 요청한 MARPOL Annex 6장 개정 초안과 관련하여 IMarEST(MEPC 59/10/5) 및 핀란드(MEPC 59/4/31)에서 검토 및 수정안을 제출한 문서를 반영하여 IMarEST(MEPC 59/10/5) 및 핀란드(MEPC 59/4/31)에서 수정한 문서를 검토하여 최종문서로 제출하였으나, GESAMP에서 59차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T/G에서 합의하였음

다. SOx monitoring

- 모든 선박에 황(S) monitoring을 하기로 결정(동의 12개국, 반대 4개국) 하였으며, 선박에서 사용하는 모든 연료(Marine fuel types)에 적용한데 동의함

- 라. MARPOL Annex 6에서 BLG 13에서 개정한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내용은 “Action requested of the Committee”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2. 거리의 측정에 대한 통일해석

가. 의제개요

- IMO 협약들 중에 언급된 “거리 측정”에 대하여 IACS가 제시한 통일해석을 논의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IACS가 제안한 이 통일해석을 MSC 85에서 이미 승인한 바 있으므로 MSC-MEPC.5 Circular로 승인하였음
- 승인된 통일해석 : SOLAS, MARPOL, ICLL 및 강제 코드에서 “거리의 측정”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형선(moulded dimension)으로 측정해야 함
- 이번 승인된 통일해석은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

3. MARPOL Annex I / Reg.23 관련 통일해석

가. 의제개요

- MEPC 58에서 승인된 바 있는 MARPOL Annex I / Reg.23.7.3.2(사고로 인한 가상 기름유출) 관련 통일해석에 대하여 부분

개정을 고려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Annex I / Reg.23.7.3.2의 통일해석 개정 (밑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통상 압력은 5kPa 값을 취한다.”

4. 고정식·부유식 플랫폼에서 기름 및 유성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규정 명료화

가. 의제개요

- MARPOL Annex I 요건에 따라 FPSOs / FSUs의 기관구역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해석을 고려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FPSO의 슬롭탱크 내용물이 생산유(油)로부터 나온 물인 경우, 이는 연안국의 규정에 따라 30 또는 40ppm 유분 농도로 배출 가능하다고 동의하였음
- FPSO 기관구역의 유성빌지를 슬롭탱크로 이송했거나 생산수 처리설비에 직접적으로 추가한 경우, 유분농도 15 ppm 초과 선외 배출을 금지하기로 동의하였음

5. MARPOL Annex I / Reg.12A의 적용에 대한 명료화

가. 의제개요

- Ro-Ro선의 구조 확장(extension of RO-Ro ship)이 MARPOL Annex I / Reg.12A “연료유 탱크의 보호”에 따른 주요개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려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Ro-Ro선의 구조 확장은 MARPOL Annex I / Reg.12A에 따른 주요개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론 내림

6. MARPOL Annex I / Reg.15 및 통일해석 22에 대한 해석

가. 의제개요

- 기관구역 빌지를 슬롭탱크로 이송한 경우 MARPOL Annex I / Reg.15 요건 및 통일해석 22에 따른 처분기준에 대하여 해석 고려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슬롭탱크로 이송된 기관구역 빌지의 처분 기준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나 다음 사항을 주지하였음
 - 기관구역으로부터 슬롭탱크로 이송된 유성 잔류물은 MARPOL Annex I / Reg.34에 따라 배출 가능하지만 Reg.14에 따른 기름 필터링장치 요건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7. MARPOL Annex V 개정에 대한 고려

가. 의제개요

- MARPOL Annex V와 이행 지침서의 개정을 위한 통신작업반의 중간 결과보고서, 및 기타 제안문서를 고려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MARPOL Annex V 개정을 위한 통신작업반이 해결한 다음 사항을 주지하였음
 - 육지로부터 거리, 선체를 소제하고 남은 잔류물, MARPOL 기타 부속서에 해당되지

않는 산적 액체, 동물 시체, 혼합 물질, 특별해역에서의 화물 잔류물, 오염물질이 아닌 유해 폐기물, 그리고 소형선에 대한 폐기물기록부

- MARPOL Annex V 개정을 위한 통신작업반의 향후 해결과제로 다음 사항을 식별하였음
 - 전반적인 금지, 폐기물 감소화, 유기된 어망, 항만 수용시설, 그리고 정의
- 특별해역 내에서 화물창 세정수 처분기준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논의(MEPC 59/6/7, 59/9)한 결과 적절한 강제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임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MEPC Circular 발행을 동의하였음
 - 건화물 잔류물을 포함하는 화물창 세정수는 걸프 해역 및 지중해 해역에서 MARPOL Annex V에 따른 폐기물로 간주하지 아니함
 - 이러한 화물창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에서 배출 가능할 수도 있음. 다만, 세정수 내의 화물잔류물은 IMDG 코드상의 해양 오염물(Marine pollutant)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동 위원회는 Joint LC(런던협약)/MEPC에서 준비한 “부패화물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채택하였고 이 지침서를 MEPC Annex V 개정을 위한 통신작업반의 검토 내용에 포함 시킴

8. MARPOL Annex I 개정 제안 - 비상상황에서 기름화물을 평형수탱크로 이송하기 위하여 개선된 화물배관의 배치

가. 의제개요

- 비상상황에서 화물유를 평형수 탱크로 이송 가능하도록 화물 배관시스템 개선에 대한

MARPOL Annex I의 개정 제안사항을 고려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아국(MEPC 59/6/9)은 모두 발언에서 유태키의 화물탱크가 손상을 입은 비상상황에서 해양으로의 기름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한 화물탱크의 기름화물을 비어있는 밸리스트 탱크로 이송하기 위한 임시 연결용 배관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아국 문서에 이의제기 문서(MEPC 59/6/13)를 제출한 OCIMF 및 INTERTANKO는 모두 발언에서 단일선체유조선이 조만간 퇴출 완료되는 상황이므로 아국 제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방콕 관련하여 P/V 밸브, flame arrestor 및 불활성가스 공급설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본 회의장 논의 상황은 다음과 같음
 - 바하마, 벨리제, 노르웨이, 아일랜드는 OCIMF에 지지 의사를 표명
 - 스웨덴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
 - 이탈리아는 실효성은 해결되어야 하나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
 - ICS는 전문위원회의 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함을 언급
- 결국, 아국의 제안은 동 위원회로부터 동의 받지 못했음

의제 8	특별구역과 특별민감해역의 식별 및 보호
------	-----------------------

1. 서유럽 특별민감해역(PSSA)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의무선박 보고 제도의 개정

가. 의제개요

- 포르투갈 이베리아 해안을 따라 새로 설립된

선박관제서비스(VTS)에 따른 서유럽 특별 민감해역(PSSA)에 입항하는 선박에 의무화 될 선박보고제도(ship reporting system)에 관하여 해당 문서의 개정 제안을 고려

- Res.MSC.278(85)로 승인된 의무 선박보고 제도가 2009년 7월 1일 발효됐는데, 이와 관련으로 이전에 채택된 바 있는 Res. MEPC. 121(52) Annex 2의 문구 수정 및 동 문서 Annex 3의 개정을 차기 NAV회의에서 검토

할 지 여부를 고려

나. 논의경과 및 의제내용

- 동 위원회는 Res.MEPC.121(52)의 annex 2 개정을 승인하였음
- 동 위원회는 Res.MEPC.121(52)의 Annex 3 개정에 대하여 NAV 55에서 고려하고 MEPC 60에 결과 보고할 것임을 주지하였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 부조리 신고는 국토해양부(www.mltm.go.kr) 부조리신고센터 –